

검 토 보 고 서

양주시 보육 조례안

양 주 시 의 회
전문위원 김 형 열

양주시 보육 조례안

□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조례 제정 이유는

「영유아 보호법」에 의하여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에 따른 보육사업에 필요한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하므로서 영유아 보육사업의 자치단체 의무에 충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 본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호법」 상에 명시한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설치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사항을 정립함과 아울러 추가적인 사항 및 우리시 자체적인 시책 추진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 조문별로 살펴보면은

「영유아 보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는 보육정보센터 업무의 위탁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에서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정보센터 또는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경우에는 공개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는 법의 취지인 만큼, 투명성있고 공정한 방법

에 의하여 위탁 대상자 선정과 운영기준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 제17조 제2항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고
재위탁은 할수 없다로 제한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항 및 제 8항에서 보육시설
의 재위탁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데 근거 한 것으로 검토 하였
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